

자영업자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
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?

-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
면세사업자(인적용역자 포함) 전체
 - ※ 전문직 사업자 제외(배우자 포함)
 - 전문직 사업자 :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의사, 약사 등
 - ※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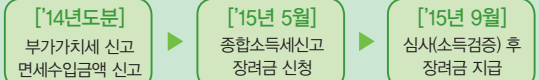
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은? (사업소득만 있는 경우)

(단위 : 만원)

업종 구분	근로장려금			자녀장려금
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	부양자녀있는 가구
가	6,500	10,500	12,500	20,000
나	4,333	7,000	8,333	13,333
다	2,888	4,666	5,555	8,888
라	2,166	3,500	4,166	6,666
마	1,733	2,800	3,333	5,333
바	1,444	2,333	2,777	4,444

※ 업종구분은 뒷면 3번을 참고하세요.

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?



※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(연말정산자 제외)



국세행정 30



2015년 근로장려금 전면시행 · 자녀장려금 첫 시행

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에게도
장려금 혜택이 주어집니다.

☎ 국번없이 126번 [1번 누른 뒤 4번]

검색창

근로장려금



NTS 국세청

근로장려세제(EITC) · 자녀장려세제(CTC)란?

-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근로 ·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은?

-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(소득검증)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.

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?

-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
-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재산합계액 1억 미만	해당 장려금의 100% 지급
재산합계액 1억 이상	해당 장려금의 50% 지급

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(2015년 신청기준)



1 근로 ·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?

● **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** 아래(①~⑦)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('54. 12. 31. 이전 출생)일 것
 - 부양자녀 : 18세 미만('96. 1. 2. 이후 출생,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
 - ※ **자녀장려금**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**기준금액* 미만**일 것
(총소득기준금액)

구 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	1,300만원	2,100만원	2,500만원
자녀장려금	4,000만원		

*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
* 맞벌이가구 :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- ③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(무주택 포함) 이하이고,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
- ④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)일 것
- ⑤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
- ⑦ **자녀장려금**의 경우 2015.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
※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

2 신청기간과 방법은?

- **신청기간** : 2015년 5월 1일~6월 1일까지
- **신청방법** : ARS, 휴대전화, 모바일 웹,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

3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?

- 2014년에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(비과세소득 제외)
-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
 - **근로소득 = 총급여**
 - 기타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 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 - **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**

업종 구분		조정률
가	도매업	20%
나	소매업, 자동차·부품판매업, 부동산매매업, 농·임·어업, 광업	30%
다	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	45%
라	숙박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, 상품중개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·환경복원업	60%
마	서비스업(부동산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, 스포츠, 여가, 수리 수선, 기타)	75%
바	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	90%

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?

- **단독가구인 경우**(만 60세 이상인 경우)

총급여액 등	근로장려금
600만원 미만	총급여액 등×600분의 70
600만원~900만원 미만	70만원
900만원~1,300만원 미만	70만원-(총급여액 등-900만원)×400분의 70

- **홀벌이 가족가구인 경우**

총급여액 등	근로장려금
900만원 미만	총급여액 등×900분의 170
900만원~1,200만원 미만	170만원
1,200만원~2,100만원 미만	170만원-(총급여액 등-1,200만원)×900분의 170

- **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**

총급여액 등	근로장려금
1,000만원 미만	총급여액 등×1,000분의 210
1,000만원~1,300만원 미만	210만원
1,300만원~2,500만원 미만	210만원-(총급여액 등-1,300만원)×1,200분의 210

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은?

- **홀벌이 가족가구인 경우**

총급여액 등	자녀장려금
2,100만원 미만	부양자녀수×50만원
2,100만원~4,000만원 미만	부양자녀수×[50만원-(총급여액 등-2,100만원)×1,900분의 20]

- **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**

총급여액 등	자녀장려금
2,500만원 미만	부양자녀수×50만원
2,500만원~4,000만원 미만	부양자녀수×[50만원-(총급여액 등-2,500만원)×1,500분의 20]

-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만원 이상 되어야 지급합니다.
※ '총급여액 등'은 2014년 부부 합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(비과세와 특정소득 제외)

① 사례1 단독가구(만 60세 이상)

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9백만원인 경우
총급여액 등 : 675만원(9백만원×75%)
☞ 근로장려금 : 70만원, 자녀장려금 : 해당없음

② 사례2 홀벌이가구(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)

본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3,000만원,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(부양자녀는 2명)
총급여액 등 : 1,550만원[(3,000만원×45%)+200만원]
☞ 근로장려금 : 103.9만원, 자녀장려금 : 100만원

③ 사례3 맞벌이가구(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)

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,000만원,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,500만원인 경우(부양자녀는 2명)
총급여액 등 : 3,750만원[(3,000만원×75%)+1,500만원]
☞ 근로장려금 : 해당없음, 자녀장려금 : 66.8만원

총소득기준금액 계산시 유의사항

구 분	기간환산	비과세소득	특정소득
연간총소득액	여	제외	합산
총급여액 등	부	제외	제외

※ 재산은 가구원 합산 / 소득은 부부 합산

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

- ① 직계존비속·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② 인정상여 근로소득
-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